

2022년 제10회 여수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  
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 월 11 일

여수시장

2021.11.11



여수시 규칙 제798호

붙임 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1부.

## 여수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여수시 및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하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0조는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 “전가”를 “전가(轉嫁)”로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3조제2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3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 및 제1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직무관련자” <u>여수시 및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u></p> <p>-----</p> <p>-----</p> <p>-----</p> <p>-----</p>	<p>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직무관련자” <u>여수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u></p> <p>-----</p> <p>-----</p>
<p>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p> <p>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p> <p>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p> <p>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p>	<p>&lt;삭 제&gt;</p>

##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주식의 경우 :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나. 지분의 경우 : 지분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다. 자본금의 경우 : 자본금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7. 퇴직한 공무원(이하“퇴직자”

라 한다)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

자인 경우

8. 채용동기 또는 학연·지연·

같은 종교 등으로 지속적인 친

분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

자인 경우

9.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

정 및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

접적인 이익을 받은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10.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

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공무원이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

호 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3.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⑦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7항 후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다시 제4항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시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시장은 그 직위에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위에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행동강령책 임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기관·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대리,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고객명, 주요 내용, 일자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 <삭 제>

## <삭 제>

##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  
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  
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  
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  
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  
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  
임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를 중  
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  
원에게 명해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  
자율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삭 제>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시장은 시(市)와 시(市)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市)와 시(市)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

<삭 제>

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골프

2. 여행

###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 향응(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소속된 법인·단체 및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2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청사, 관사, 건설중기 등 시(市) 소유의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

<삭 제>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

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 2. (생략)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  
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  
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  
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  
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  
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  
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  
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전가(轉嫁)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  
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  
는 행위

##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

## 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 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 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  
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 수 제한) ① (생 략)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삭 제

## ④ ~ ⑫ (생 략)

#### 제24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 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 ~ ⑫ (현행과 같음)

## <작제>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

결하는 행위. 다만, 입찰·경매·  
공매를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  
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  
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  
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  
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  
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  
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  
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  
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친  
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  
족을 말한다)인 경우는 신고대  
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  
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  
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증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  
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  
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